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의료지원 격차 완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해소 및 의료기관 선택폭을 넓히고자 위탁병원의 의료지원을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 비용까지 확대하고, 약제 비용 지급 신청 및 접수 등 업무 처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·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(안 제9조)

위탁병원 의료지원 범위에 약제 비용을 포함하고, 연간 지원금액은 고시로 정함

나. 위탁병원 약제 비용 신청 및 지급업무 권한의 위임·위탁(안 제18조)

약제 비용 지급 신청서 접수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고, 지급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'22년 소요예산 반영(4분기, 6,904백만원)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와 소요예산 관련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부담할 약제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한도내에서 지원한다.
- ⑦ 제6항에 따른 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약제비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7조 및 이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약제비 신청의 접수
-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9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.

부 칙

신·구조문대비표

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9조(의료지원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조(의료지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부담할 약제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한도내에서 지원한다. ⑦ 제6항에 따른 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약제비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8조(권한의 위임)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	제18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. 1. ~ 3. (생략) 4. 법 제7조에 따른 진료의 위탁	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법 제7조 및 이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약제비 신청의 접수
5. ~ 15. (생략) ② (생략) <신설>	5. ~ 1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9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	
연락처	(044) 202 - 5641